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와 보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 치 학 전공

박 귀 영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와 보호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29일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 치 학 전공

박 귀 영

박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형 종 인

심사위원 박 성 호 인

심사위원 송 영 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23년 12월 29일

차례

표 차례	iv
그림 차례	v
국문 요약	vi
제1장 서론	1
1. 1 연구 필요성	1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7
2.1 이론적 배경	7
2.1.1 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7
2.1.2 인권의 개념	9
2.2 분석 틀	21
제3장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현황과 추이	23
3.1 북한이탈주민 증가추세 및 인권침해 증가 현황	23
3.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	27
제4장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원인 분석	33
4.1 개인적 수준	33
4.1.1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인권침해	33

4.1.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인권침해 보호 대응	37
4.2 국가적 수준	40
4.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41
4.2.2 북한이탈주민 남한에서의 인권 침해	52
4.2.3 국내법적 보호 대응	53
4.2.3.1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국적 지위 부여	53
4.2.3.2 국민과 동등한 사법상의 권리	54
4.2.3.3 무국적의 북한이탈주민과 아동	55
4.2.3.4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56
4.3 국제적 수준	58
4.3.1 북한이탈주민 해외 인권 침해	59
4.3.1.1 강제송환	60
4.3.1.2 노동력 착취	63
4.3.1.3 청소년 인권침해	64
4.3.2 국제법적 보호 대응	67
4.3.2.1 협약난민(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	68
4.3.2.2 위임난민과 현지난민	71
4.3.2.3 고문방지협약	73
4.3.2.4 인도적 지위 부여 및 보완적 보호	7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5
참고문헌	82

ABSTRACT 92

표 차례

표 1. 분석 틀	22
표 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23년 9월 말 입국자기준, 단위: 명)	24
표 3. 연령별(입국 시 기준) 입국현황(2021.3월말 기준, 단위 : 명, %)	26
표 4. 재북직업별 입국현황(2021.3월말 기준, 단위 : 명, %)	27
표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41
표 6. 정책과제와 정착지원제도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내용	44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4
그림 2. 탈북자 지원 시스템	47
그림 3. 세부 추진계획	51

국문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와 보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원인을 살펴보고 보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원인을 개인적인 수준, 국가적인 수준, 국제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호 측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인권침해도 증가하였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인신매매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호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 과거에 비해 여성 북한이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겪은 인권침해는 주로 인신매매, 성매매 등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한국 대중의 차별과 편견은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단위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현재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수준의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며 한국 대중 또한 자신의 하는 말과 행동이 인권 침해인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인적 보호 수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담 멘토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자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조사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며, 여성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사관을 확보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조사관이 직접 신문하거나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과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3. 국내법 보호 수준의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한 개인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보호 및 소수자의 보호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4. 국제법상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인 지위는 난민협약에 따라서 협약난민 지위와 보호를 하는 국가도 있고, 위임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협약난민, 또는 난민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막고,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끊임없이 정치적 노력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방 및 보호, 해결의 전략을 강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유출을 예방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인권기록 조사가 확대되어 정보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함을 피력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

민의 긴급한 필수요건을 해결하도록 중국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도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국제법, 국내법, 인권침해, 보호방안

제1장 서론

1.1 연구 필요성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로 혼용하여 표기)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은 2,000명~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33,882명이라는 적지 않는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 중이다.¹⁾

입국하는 탈북자의 성별도 90년대 초에는 남성이 우위였던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여성의 비중이 약 83.1%에 달하고 있다.²⁾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근래의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우리나라의 사회 일원으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은 탈북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들 중 대다수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던 상황에 비해 한국 입국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입국과정에서 마주하는 국내와 국외적으로 곤경에 처하고 브로커에 대한 재정적 압박문제, 국내 입국 후의 정부합동기관의 조사 과정과 집단교육과정(하나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사례 문제 및 하나원 퇴소 후에도 정착과정에서 취업과 자녀교육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어

1) 통일부(2023년 11월 15일 검색)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2) 통일부 2023년 9월 기준

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북한을 떠나 타국에 머무르는 동안 탈북자의 생존권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통일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탈북자 자신들이 어디에서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굶주림, 폭행, 질병, 강제 송환, 수용소 생활 및 가족과의 이별 등으로 힘들어하며³⁾이런 경험들에 의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어 불안, 우울, 음주 문제 등을 겪는다.⁴⁾또한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주민을 한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탈북자는 단일민족이라는 프레임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으로 생각되는 이방인 또는 경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탈북자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와는 다른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탈북자의 입국 배경, 입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으며, 인권침해 내용의 다양성과 영역별 심층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⁵⁾ 탈북자의 가

3) 오은경, 류진아(2021).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분석: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여성연구, p. 374.

4) 김연희(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2, 1780.

5) 박정란, 강동완(2011).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경제·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62.

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취업 시 북한말투와 외래어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한국사회에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탈북자들은 복합적인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낙인과 선입견으로 특히 탈북 여성들은 정신적인 상처가 심화되고, 국정원 등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지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있다.⁷⁾

남한주민이 탈북자에게 편견을 갖는 이유에 대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38.8%)가 가장 높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29.0%), 북한에서 왔으므로(24.2%) 등이며, 별다른 편견이 없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⁸⁾ 또한 탈북자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한민국 국민(36.8%), 탈북자(60.4%)가 동시에 높았다. 탈북자가 말한 남한에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개인의 노력 부족(45.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37.6%)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67.6%), 소득의 차별(50.5%), 승진에 대한 차별(52.7%), 따돌림을 당한다(38.6%)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었지만, 탈북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약 20%로 보고되고 있다.⁹⁾

탈북자들은 탈북을 하는 과정의 중간 체류지인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며 죄인 취급을 당한다. 특히 여성은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매매혼, 임금착취 및 학대에 노출되어 시간이 경과 되어도 고통을 받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6) 김혜은(2014). 클릭! 교육목회 자료: 문화옛보기; 따뜻한 밥상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가족, 사랑. 교육교회, 438, p. 70.

7) 박순성, 고유환, 소라미, 이임하, 이영희, 전미영, 차문석(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8) 신미녀(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1), p. 110.

9) 박호성(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정착과 사회적응에 장애로 작용한다.¹⁰⁾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는 온전히 본인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 요인으로 되고 말았다.¹¹⁾ 최근 들어서는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자녀의 문제로 이어진 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¹²⁾

조소연(2015)은 탈북자는 국제인권법의 전 조항에 어긋나는 심각한 정도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 및 신체적인 폭행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3국 체류 시도 생존권에 대한 권리만 보장받을 뿐이며,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및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남한으로의 입국하는 과정에도 신체 자유와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하였다.¹³⁾이외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및 정부의 대응을 고찰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¹⁴⁾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으며, 또한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보고서나 인권침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0) 양민숙, 이동훈(2017).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137.

11) 이소희, 이원웅, 이해우, 전진용, 노진원, 한우리.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64-01.

12) 김미주, 김석향(2020).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젠더와 문화, 13(2), 191-221.

13) 조소연(2015). 국제인권법을 통해 본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윤리연구, 1(105), 243.

14) 주인석(202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문제-국제사회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통일전략, 22(1), 135.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의 인권의식 부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적 제도는 어떠한 상태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제법적 제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추세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탈과 한국 정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단지 이탈자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별 및 연령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북한이탈자 비중의 증가는 인권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가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개인적인 수준, 국가적인 수준, 국제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북한이탈자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것은 인권 침해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인권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적 부주의 또는 대응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 차원의 보호와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에 관한 연구는 연구 방법론상 제약을 동반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신분상 범법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여 조사하기는 어려운 집단이다.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고 직접적인 조사활동은 제한된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발생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하고, 탈북 장소인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시각의 접근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와 국외의 북한이탈주민의 표본적인 성격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 규모와 연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아직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서적,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인터넷, 세미나, 공청회 자료, 신문, 정기간행물, 행정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2.1 이론적 배경

2.1.1 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이다.¹⁵⁾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은 재북화교(華僑),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조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북송재일교포 등이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경우 월남귀순자, 귀순북한동포, 월남귀순용사,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자유 북한인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한 시각도 포함하고 있는데, 귀순은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본인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였고, 이는 남북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가 담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을 제거하고 독일과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자유북한인이라는 뜻은 일부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새로운 의미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난민(refugee)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

15)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8.

지 못하면서 인권침해를 받고, 강제송환 시 처벌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¹⁶⁾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자가 민족의 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인 처벌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져 처벌의 상대가 변화하였으며 다수의 경우에는 탈북의 원인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우에서 식량난민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북한(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여 국적국을 탈출한 난민들과 차별화되며, 이들 중에서 일부는 난민으로 규정되어 보호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 국적국 밖으로 떠돌고 있는 경우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북한을 탈출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1항에 근거하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주민, 탈북민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들이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지속적인 탈북행렬의 원인은 시대별로 많이 변화했다. 우선 1990년대 이전 당시 북한과 국경을 맞댄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과 소련 및 대한민국 정부가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므로 탈북의 경로 자체가 완전히 제한되어 해외국가를 경유한 탈북이 아니라 목숨을 건 휴전선, 해상, 항공로를 통한 탈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 경로가 제한됨에 따라 당시 탈북자들은 휴전선 등지에서 근무하거나 전투기를

16)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조종하던 북한의 군인 출신이 주였다.

우리나라는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정식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에 우리 대사관이 들어서고,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인적 교류가 시작 되면서 제3국을 통한 탈출의 경로가 확보되고 북한 내에 외부사조 유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에 1991년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었고,¹⁷⁾ 1995년 북한 내의 대규모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촉발된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생존을 위한 일반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이 급증하였다.¹⁸⁾ 1990년대가 생계난의 타개 등 생존을 위한 탈북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물론 북한 내의 식량난 등은 여전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내의 장마당의 활성화, 중국과의 개인 밀무역의 횡행 등 이로 인한 외부사조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생계형 탈북보다는 보다 나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찾아 떠나는 자발적인 이주민 형태의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2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17) 특히, 소련을 통해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었던 원유공급이 사회주의 국가 붕괴현상으로 중단됨에 따라 급격한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18) 원래 의미의 '고난의 행군'이란 1938년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흑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위해 100일간 행군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33면), 여기서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 내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1996년 김정일이 신년사설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희생 및 인내를 강요하기 위해 내걸은 당 구호를 의미한다.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의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고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¹⁹⁾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많은 학자들은 인권개념을 필수적 권리로 보았다.²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 각각의 문화권에서 인권의 개념이 세워졌다고 해도 근대적인 인권 개념은 대체적으로 17세기 서구에서부터 비롯되었다.²¹⁾ 특히 인권이 인간의 구체적인 기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이다.²²⁾ 로크, 홉스, 루소 등에 의해 주장된 자연권 사상은 인간의 자연권이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였다. '자연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며 우주 통치자인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또한 순수한 우주적인 이성인 자연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인간은 이성이라는 자연의 빛을 통하여 자연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²³⁾ 오늘날 인권의 개념은 로크의 자연권 개념과 비슷

19) 국가인권위원회(2020. 07. 20)법률 제1712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20) 이진혁, 최정민(2020).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3), 73-91.

21) 정영철, 손호철(2014).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현대정치연구*, 7(1), 259-283.

22) 정영철, 손호철. 앞의 논문.

하고, 이를 변형한 것이다.²⁴⁾ 로크는 개인 각각이 신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지고 이성을 부여받았으며, 타인의 자연권에 대한 존중 의무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할 수 없는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였다.²⁵⁾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현재까지 인권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인권선언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²⁶⁾ 이렇듯 고대의 철학적인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인권은 중세 계몽주의 혁명을 통해 하나의 보편적 이념으로 등장하였다.²⁷⁾ 그러나 프랑스 혁명 때부터는 자연권에 대한 개념의 믿음이 줄고, 이후 많은 비판을 받으며²⁸⁾ 사회과학, 특히 산업자본주의에서 시작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이 자연권의 개념을 대신하였다.²⁹⁾ 그러나 UN이 나치주의에 반발하여 인권이라는 개념을 채택하며 자연권의 전통이 부활하였고,³⁰⁾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한 이래로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확장하고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권에 대한 이해는 다음 세 가지 성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³¹⁾ 첫째, 인권은 권리 개념에 종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인권의 철학적 의미는 일반적 권리 관념에 밑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은 도덕적인 권리로,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뛰어넘어 존재해야 한다. 셋째, 하지만 모든 도덕적인 권리가 다 인권은 아니다. 어떤 도덕적인 권리가 인권이 되는지

23) 김비환(2010).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서울: 이학사.

24) 도널리(Donnelly)는 근대 인권 개념이 대체로 17세기 영국, 특히 로크의 『제2정치론(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에서 비롯된다는 일반적 견해를 재확인하였다(Donnelly, 1989: 89, 104-105; Freeman, 김철효 역, 2005: 41).

25) Freeman. M.(2002), 김철효 역(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 아르케.

26) 정영철, 손호철. 앞의 논문.

27) 정영철, 손호철. 앞의 논문.

28) 자연권에 반대하는 인권비판은 주로 보수주의(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등), 공리주의(제레미 벤딕(Jeremy Bentham) 등), 그리고 사회주의(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등)와 현대의 사회과학(베버(Weber), 뒤르켄(Durkheim)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Freeman, 김철효 역, 2005: 47-52; 정영철·손호철, 2014:262; 국가인권위, 2018: 5).

29) Freeman. M. 앞의 책.

30) Freeman. M. 앞의 책.

31) 오병선 박종보 김비환 홍성필 박경서(2011). 인권의 해설.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그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인권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본성이 '권리'이므로,³²⁾ 인권은 권리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자연법의 사상에서 인권은 근원과 정당성을 크리스트교의 신에게 구하는 자연권이었으나,³³⁾ 현대 인권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에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이론 혹은 그보다 더 사회구성주의적 이론을 인용하여 인권은 인간이 창조하고 만드는 권리로 보는 권리의 합의형 모델에 가깝다고 본다.³⁴⁾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권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권리 개념을 설명하는 학설로는 이익설, 의사설, 법력설이 있다.³⁵⁾ 의사설이란 권리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이나 의사의 지배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설은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권리의 자유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인권 중에서 자유권은 이러한 입장에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익설에서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인간의 자유 또는 선택보다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느냐의 여부가 권리의 핵심이다. 인권 중에서 적극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은 이러한 면에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법력설은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법익)을 누리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다. 법력설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법력설은 인권이 실질적인 권리 개념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그 힘은 대표적으로 국가에 의한 법의 집행력이며, 이것에 의해 담보되는 권리가 법력설의 핵심이다. 이러한 다수설의 입장에서 '사람의 권리'인 인권은 단순히 이익 이상의 개념이며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32) 조태훈(2011). 논문 : 인권의 개념. 민족연구, 0(45), 156-178.

33) Freeman. M. 앞의 책.

34)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서울 : 후마니타스.

35) 박찬운(2011). 인권법. 파주 : 한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①권리의 주체(권리 보유자), ②의무의 주체(권리 상대방), ③권리의 내용(~에 대한 권리), ④권리 인정(권리 부여)의 근거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³⁶⁾ 이러한 권리의 공통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생각해보면,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은 ①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고, ②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장이 가능한 일반적인 권리, ③그 내용은 인간으로서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진 근본적인 권리이자 ④법 체계의 승인과 관계없이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은 도덕적인 권리이다. 권리는 도덕적인 권리와 법적인 권리로 구분한다. 법적인 권리는 실정법에 근거하여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벤덤 이후의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이 있어야 권리가 생기고, 법률로 집행이 가능한 권리만이 권리라고 하였다.³⁷⁾ 프리먼(Freeman, M.)은 이에 대해 '인권이 법률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권의 개념에는 법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만약 인권이 법률로서 집행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며, 인권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권을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할 때이다. 법실증주의가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법 제도가 부당한 행위를 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를 없애는 경우가 된다고 하였다.³⁸⁾ 따라서 인권의 개념이 유용하려면 인권(human rights)은 특정 사회의 법적인 권리(legal rights)나 기타 바람직한 목표와는 구분되어야

36) 김도균(2006). 인권의 개념과 원리. 임재홍 외, 인권법. 서울: 아카넷.

37) 조효제(2007). 앞의 책.

38) Freeman, M. 앞의 책.

한다.³⁹⁾

조효제(2007)의 연구에서는 법이 있어야만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법실증주의는 법의 존재 이전의 직관적 또는 선형적 권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편인데, 인권을 지나치게 법으로 해석하고 인권 문제를 법으로 귀결시키는 태도는 법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법실증주의에서 실정법은 도덕적으로 옳다(또는 옳아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독일의 나치,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에서와 같이 법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악법에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인간은 실정법과 관계없이 도덕적인 근거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적인 권리와 별도로 존재하는 도덕적인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악법에 저항하는 것, 혹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어떠한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다 도덕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인권은 실정법과 관계없이 도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만으로 인권을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든 도덕적인 권리가 다 인권은 아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권리가 인권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준에 달려 있다. 인간은 인간사회에 속한 존재이므로 인권을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정치공동체와 전혀 상관없이 인권을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사회는 모든 인권을 언제나 동시에 똑같이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과 의무의 주체 등 인권과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은 당연히 인권의 목록들 사이에서 타협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⁴²⁾ 따라서 인권의 주체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뉘

39) Freeman. M. 앞의 책.

40) 조효제(2007). 앞의 책.

41) 조효제(2007). 앞의 책.

42) 조효제(2007). 앞의 책.

의 기준과 가용자원, 역량, 타이밍, 전략적인 판단 등에 따라 특별히 의제화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을 정한다. 그리고 인권을 어떤 것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어떻게 정할 것인지, 권리의 극대화는 어떤지, 최적화가 좋은지의 문제들은 그 사회의 맥락과 발전 단계, 자원의 존재 여부, 사람들의 욕구, 인권운동의 압력, 그 사회의 정치문화 등에 기인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법적인 권리는 사법부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인권은 다소 모호한 언어로 표현되고 그 의미 또한 사법부가 항상 정하지 않는다.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다.⁴³⁾ 따라서 추상적인 주장의 인권은 '정치적 절차'를 통하여 국제법과 국내법 등에 의해 인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⁴⁴⁾ 그러므로 인권은 정치와는 무관할 수 없다.

한편, 도덕적인 권리로 그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로 발현되기 위해서 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인권이 법적인 권리보다 더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인 권리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⁴⁵⁾ 따라서 인권에 대한 요구도는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화되어 스스로 청산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⁴⁶⁾

앞서 본 인권의 개념과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R. Alexy(1999)는 인권이란 보편성(universality), 도덕성(morality), 근본성(fundamentality), 우월성(priority), 추상성(abstracity)이라는 다섯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⁴⁷⁾첫째,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이란 '모든 인간

43) Freeman. M. 앞의 책.

44) 조효제(2007). 앞의 책.

45) Campbell, Tom(2006). Rights :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46) Donnelly. J.(1998),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 오름.

사람,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도덕성은 인권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도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근본성은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근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다른 권리는 포기하더라도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넷째, 인권에 대한 추상성은 인권의 의미와 내용의 경계가 대단히 불확실하며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과 도덕성, 그리고 근본성에서 시작하는데, 사람과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인 만큼 추상적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우월성은 실정법과 인권이 충돌할 때에 인권은 실정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실정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됨을 의미한다.

인권의 특성은 권리 주체의 보편성 및 권리 상대방의 일반성, 도덕적인 정당성, 인권 대상 근본성과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으로 김도균(2006)은 보고하였다.⁴⁸⁾ 인권은 개인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부과된 권리이고, 인권의 상대방은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 및 국가 등을 포함하므로 권리 주체의 보편성과 권리 상대방의 일반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어떠한 규범이 모든 개인에게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규범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권리의 내용이 중요하며 모든 개인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인권 대상의 근본성은 인간이 신체적인 안전, 최소한 생존, 자주성 핵심 영역 보장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긴박한 재화들이나 가치들'이 인권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

47) R. Alexy,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S. Gosepath/G. Lohmann(편),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제2판, Frankfurt/M, 1999, p. 246.

48) 김도균(2006). 앞의 책.

며,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 내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제도적인 권리, 또는 실정법적인 권리에 우선시되는 지위를 가지며,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을 가진다.

오병선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인권의 본질적 특성을 보편성(universality), 도덕성(morality)과 제도 초월성, 불가분성(indivisibility),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priority)으로 보고하였다.⁴⁹⁾ 첫째, 보편성(universality)이란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보편적인 주체성이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종과 성별, 사회적 지위, 권력, 장애 여부 등과 같은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둘째, 도덕성(morality)과 제도 초월성은 인권이란 그 구속력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에 기인한다. 이는 인권의 도덕적인 특성이 인간성이라는 가장 본원적인 근거임을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하며, 인간성 그 자체가 인간 특유의 도덕적인 본성인 만큼 이 권리는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는다고 생각되는 도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은 다양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제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제도를 정당화하며, 인권 기준에 반대하는 제도에 대해 이를 비판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한다. 셋째, 불가분성(indivisibility)은 시민 및 정치적, 경제 및 사회적, 집단 및 연대적 인권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보며, 각 부문을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분성의 원칙과 그 실현을 위하여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원칙은 UN 총회 결의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넷째, 우선성(priority)은 인권의 도덕성과 제도 초월성을 가지므로 인권은 실정법에 대하여 우선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실정법 권리가 인권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49) 오병선 박종보 김비환 홍성필 박경서(2011). 앞의 논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인권이 실정법 권리의 내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박찬운(2011)의 경우 현대 인권의 특성을 보편성, 평등성, 상호 연관성, 불가양성, 역사성의 다섯 가지로 보고하였다.⁵⁰⁾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평등성은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즉, 인종, 성, 언어, 민족 등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뜻한다. 상호 연관성이란 인권의 목록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거나 완전히 독자성을 띄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았다. 불가양성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됨을 뜻하고, 역사성이란 인권의 보유 및 향유 조건, 인권 대상, 정도, 범위 등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변화 또는 발전해왔으며, 미래에도 비슷하게 변화되고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인권의 특성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는 보편적이면서 근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의 경계가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사회의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⁵¹⁾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변화되거나 확장하고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슷하게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은 그 근원을 인간성 자체에 두고 있으므로 모든 개인에 대해 정당화되는 보편적인 효력을 지니는 도덕적 권리로, 제도적인 권리 및 실정법적인 권리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알 수 있다.

50) 박찬운(2011). 앞의 책.

51) Donnelly. J. 앞의 책.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형성의 배경은 북한이라는 사회와 탈북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⁵²⁾ 정상우 등(2016)은 북한에서 개인의 인권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교육(35.9%), 강연 및 학습(29.9%), 외부정보(15.6%), 북한 매체(12.1%), 주변 사람들(10.4%) 순으로 보고하였다.⁵³⁾

또한 김윤나(2013)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과 실태는 매우 심각한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들은 본인이 인권침해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⁵⁴⁾ 박호성(2004)은 탈북자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정도는 높지 않으며, 조사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⁵⁵⁾ 정상우(2016)등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침해 의식과 개념에 대하여 북한에서 생활할 때 인권에 대해 접근성이 부족하여 인권침해 의식과 개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 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관점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매우 다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받아들이는 인권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⁵⁶⁾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 후의 인권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3.8%가 인권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기관은 하나원(30.8%), 하나센터(17.1%),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15.1%), 시민단체(11.6%) 순이라고 하였다. 인권의식은 인지적인 요소(지식 또는 신념과 관련),

52) 정상우, 강은영(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175~208.

53) 정상우, 서보혁, 김윤나, 최정호(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2601.

54) 김윤나(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1-21.

55) 박호성(2004, November).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I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188-207.

56) 정상우, 서보혁, 김윤나, 최정호(2019). 앞의 논문.

정서적인 요소(인권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관련), 행동적인 요소(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혹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천 노력과 관련)로 구분한다.⁵⁷⁾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과 형성배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⁵⁸⁾ 국내 입국 후의 생활에서는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았고, 학력과 학벌(25.7%), 비정규직(24.2%) 등의 순으로 인권의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위와 같은 인권차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⁵⁹⁾

박호성(2004)은 조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징을 재구성하여 보고하였다. 첫째, 응답자 48.9%가 인권이란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문화와 언어적인 차이,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인 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셋째, 사회보장 및 최소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넷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응답한 탈북민은 전체 응답자의 6.4%로 다른 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4.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타인으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권리) 2.1%(1명)를 종합해보면 총 14.2%가 자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섯째, 탈북자들이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57) 이진혁, 최정민(2020). 앞의 논문.

58) 정상우, 강은영(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175-208.

59) 아시아타임즈(2018. 09. 26.). 인권위,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해야.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관점 또는 인권관이 점차 변함을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인권을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고, 반면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⁶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생활에서 인권 침해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하면서 국외에서 받은 인권침해 사례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분석 틀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추세에 주목하여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과 대응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원인을 세가지 수준에서 구분하면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의 원인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의 인권의식 부재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국가적 수준의 원인은 국내 법적 미비점을 알아보고 국제적 수준으로는 국제법 미준수 측면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개인적 수준의 대응적 측면은 북한이탈주민 개인 인권의식 함양과 북한 이탈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기관 및 관계자, 한국

60) 박호성(2004, November). 앞의 논문. p. 188-207.

대중의 인권의식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국내법의 제도 정비,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노력과 국제법 이행 및 준수에 대하여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재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중점의 상황을 알아보고,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틀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인권의식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적제도의 미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미준수 측면
대응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 북한이탈주민 대상 및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한국기관, 관계자, 한국 국민의 인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적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적인 노력 • 국제법 이행 및 준수

제3장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현황과 추이

3.1 북한이탈주민 증가추세 및 인권침해 증가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은 2,000명~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고, 현재 33,882명이라는 적지 않는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 중이다.⁶¹⁾ 특히 2012년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통제 강화, 탈북 브로커 비용의 상승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 인원이 연간 1,100명~1,500여명 수준으로 예전 대비 감소하기도 하였다.⁶²⁾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국경봉쇄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에는 탈북자 인원이 급감하여 전년 대비 1/5 수준인 200명대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으며,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61)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3.11.15.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3.11.15. 검색))

62) 연합뉴스(2018.9.30). 김정은 체제 이후 한국입국 탈북 감소..통제강화 원인.<https://www.yna.co.kr/view/AKR20180930028200001?input=1195m>

표 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23년 9월 말 입국자기준, 단위: 명)⁶³⁾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9월 잠정	합계
남	302	188	168	202	72	40	35	26	1033
여	1,116	939	969	845	157	23	32	113	4,194
여성 비율 (%)	78.7	83.3	85.2	80.7	68.6	36.5	47.8	81.3	72.0



그림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23년 9월 말 입국자기준, 단위: 명)⁶⁴⁾

63)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ly/>(2023.11.15. 검색)

64) 관계부처 합동(2023)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탈북자 입국현황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비 분포에 있어 남성 대비 여성 탈북자의 압도적 우위이다. 1998년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12%에 불과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비율이 남성 비율을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80% 이상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고,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체적 입국인원이 소규모에 그친 2020년에는 68%로 그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 변화는 앞서 본 탈북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탈북경로의 제한으로 탈북자가 군인 출신인 남성이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사회주의권 국가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진출한 남성이 주된 부류였다.⁶⁵⁾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북한내 사실상 국가 경제 붕괴 이후 장마당과 중국의 밀무역을 통해 북한내의 여성들이 주된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과의 왕래가 빈번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탈북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일단 탈북한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중국 등지에서 일자리 확보가 더 용이하여 국내입국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였고 외국인과의 동거를 통한 은신처 확보 등이 유리하여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탈북자 입국 현황의 또 다른 특징은 연령별 분포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탈북자의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20~29세가 전체 인원의 27.9%, 30~39세는 전체 인원의 28.8%를 차지하였고, 20~39세의 청년층과 장년층 탈북자는 전체 탈북자 대비 56.7%의 비율이었다. 더욱이 40대 연령대까지 합치면 20~49세 연령층의 비중이 전체 탈북자 대비 총 75%이다. 이처럼 입국 현황상 청년층과 장년층의 입국비율이 높은 이유는 탈북을 위해

65) 뉴스핌(2020.1.17).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00117000252>

서 장시간 행군 등 육체적인 어려움이 큰 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북한 내의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전체 북한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⁶⁶⁾ 이에 따라 이들이 중국 등의 외부와 교류로 인해 탈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용이한 점 등이 탈북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연령별(입국 시 기준) 입국현황(2021.3월말 기준, 단위 : 명, %)⁶⁷⁾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608	1,630	2,650	2,125	1,456	597	360	9,426
여	601	1,960	6,774	7,598	4,782	1,546	1,034	24,295
비율 (%)	3.5	10.6	27.9	28.8	18.4	6.3	4.1	100

마지막으로 탈북자 입국현황 특징은 재북 직업상 무직 및 노동자 등 사회저변층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무직으로 부양 대상자인 인원이 전체 인원의 44.9%, 단순 노동자는 39.5%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인원 대비 84.4%를 차지한다. 사실상 탈북자의 대다수가 재북시 무직이거나 노동자로서 1차적인 생산능력만을 보유하던 것을 알 수 있다.

66) 아시아경제(2018.6.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1412034419935>

67) 통일부 홈페이지>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 정책>정책자료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archive/>

표 4. 재북직업별 입국현황(2021.3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관리 직	군인	노동 자	봉사 분야	무직 부양	전문 직	예술 체육	아동 학생	합계
남	410	716	4,140	92	3,215	231	84	538	9,426
여	139	160	9,197	1,447	11,948	524	221	660	24,295
비율 (%)	1.6	2.5	39.5	4.5	44.9	2.2	0.9	3.5	100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북한이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계획경제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북한 내의 일자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이고, 한편으로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지식산업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적응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⁶⁸⁾

3.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입국하지만,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를 다룬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선행논문과 자료들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겪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신매매와 결혼문제에 관하여 정영선(2018)⁶⁹⁾과 배성희(2021)⁷⁰⁾의 연구를 많이 참조 하였다.

68) 이상훈(2012)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6.

69)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70) 배성희(202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성(2009)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국적 없는 삶이란 중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으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채명자(2018)는 연구 참여자들은 국경을 무사히 넘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도 없이 불법체류라는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였다. 생존을 위하여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중국의 깊은 산골 마을에 매매혼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이경(2019)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남성들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인권이 없는 노예와 같이 대한다고 한다. 이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만 자신들이 '구매된 재화'이므로 자신의 '구매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국에서 신분이 없는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하소연 할 것도 없다고 한다. 이를 악용하여 중국인 남편은 공안에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성적 희롱을 하거나 노동 착취를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공안에 적발되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에서의 엄중한 처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온갖 학대와 착취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

정상우 외(2016)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주여성들과는 달리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비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이주여성들과는 다르게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 절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인 난민으로 보면 북한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비난과 압박도 정책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과 관련한 지위 부여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정영선(2018)은 대다수의 여성은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 강제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여성성을 착취당하며, 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경험에 대하여 선의의 다른 얼굴(배신), 극심한 빈곤 속 상품화된 여성,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돈에 팔림,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불가능한 귀향길, 현실과의 타협과 적응, 좁혀오는 체포망, 더 나은 삶, 중국보다 한국, 한국으로 통하는 문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출구 없는 세계 탈출구의 발견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본인의 몸값이 정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과 남한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권침해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소 부족하다. 인권이 유린된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까스로 탈북하여 한국에 온다. 이들은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 정착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인권침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아시아지역에 많이 발생하며 중국은 오랫동안 인신매매를 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인신매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⁷¹⁾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으로 탈북하던 초기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농촌의 중국동포 또는 한인 노총각과 결혼을 주선해주고 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⁷²⁾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폭력배와 연루된 대규모 인신매매조직을 통해 돈을 받고 각종 유흥

71) 연합뉴스(2004.3.25.). <http://news.navilcom/main/read.nhn?^~LSD&mid=sec&sidl=100&oid=001&aid=0000603046>

72) 고경화(2006).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p. 15.

업소에 강제적으로 팔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성폭행, 강제낙태, 매춘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⁷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신매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강제, 납치형이다. 폭력과 폭행을 동반한 강제적인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납치는 주로 국경근처에서 막 탈북하거나 중국에 체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납치된 여성들은 거래자에게 인계되어 차량 또는 기차로 대도시와 내륙지방으로 이송된다. 나이, 미모, 결혼 유무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해 중국의 처벌은 엄중하므로 인신매매는 은밀하게 거래되는데 인신매매조직은 다단계 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피한다.⁷⁴⁾

둘째, 소개 및 유인형이다. 사람을 소개한 중매인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은 중국의 오래된 문화이다. 이러한 중매혼의 관행을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처녀들을 유인하여 중국으로 데려오는 유인형의 인신매매가 성행하였다. 중국으로 유인된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중국인이나 조선족 노총각, 홀아비, 장애인에게 결혼형태로 소개되며 양딸로 입적된 다음 성적 봉사를 강요당한다. 때로는 소개자들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도망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도망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다른 곳에 소개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⁷⁵⁾

셋째, 복합형이다. 북한에서 유인된 여성을 강제적으로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복합형 인신매매도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중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도 대상이 된다. 생계수단이나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주겠다고 유인한

73) 이우영(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p. 18.

74) 김영자(2000). 앞의 논문. p. 47-50.

75) 윤여상(2002). 강제송환 공포에 숨어사는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삶. 북한, p.152.

후에 팔아넘긴다. 불법입국자에 대한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면 이러한 사례는 많이 증가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인신매매 규모는 단지 추정될 뿐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 중에서 50%이상은 인신매매 당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합법적인 결혼, 자발적인 유흥업소 종사자도 상당 수 있다. 일단 체포되면 강제송환 당하는 현실 속에서 다수의 젊은 여성들은 쉽게 은신하면서 생존을 위한 인신매매의 길로 가고 있다.

자발적인 결혼은 중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지어를 못하므로 취업하기 어렵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남성과 사실혼이라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동거를 선택한다. 그러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언어소통이 향상되면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활용되면서 사실혼과 관련된 한국인 남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례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여성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중국은 인신매매 사범은 중형에 부과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공개되지 않고 처리되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이 문제가 공개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인신매매 사실을 고발하거나 공안에 의해 적발된다해도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므로 자신의 실명을 말하고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을

76) 이금순(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13.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한편, 북한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인신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중국에 인신매매한 개인에 대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하여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청진, 무산, 회령, 온성 등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1998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원인 분석

4.1 개인적 수준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개인적 수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며, 북한이탈주민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4.1.1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인권침해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국민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해,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차별과 관련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45.5%)을 가장 많이 받고, 학력과 학벌, 나이, 비정규직,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⁷⁸⁾ 또한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집단은 일반 시민(20.6%), 직장

77) 국가인권위원회(2023년 3월 1일)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92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78) 정상우, 서보혁, 김윤나, 최정호(2019). 앞의 논문.

상사(17.9%), 직장 동료 (16.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취업소개를 찾아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일본이나 영국, 미국 등의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직업소개를 통해 외국으로 팔려 간 사례를 말하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⁷⁹⁾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달갑지 않은 사회복지 수혜자로 바라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제도에 정해진 지원금과 사회복지 혜택을 문의하는 경우 겪게 되는 수모 및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담당자들과 접촉을 꺼리거나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차별적 시선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지만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인권차별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였다.⁸⁰⁾ 차별받은 사항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67.6%)가 가장 높았고, 승진차별(52.7%), 소득차별을 느낌(50.5%),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낀다(38.6%)순으로 나타났다.⁸¹⁾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남한 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자신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제3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가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국민 만들기 과정인 국정조사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을 스스로 타락한 여성 또는 몸을 버린 여성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낙인과 연결되면서 또다시 정신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조건이 된다.⁸²⁾ 북한

79) 박순성, 고유환, 소라미, 이임하, 이희영, 전미영, 차문석, 홍민(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80) 김성남(2019). 탈북민의 영국 이주 생활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1) 박호성. (2005). 앞의 논문.

이탈주민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외국인 대체인력으로 대해 왔다.⁸³⁾ 한국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권의식 및 인권 보장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에서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 할 의무가 있다.⁸⁴⁾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라고 답한 경우가 40.1%를 차지하여 출신 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⁸⁵⁾ 이는 단순하게 출신 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가 27.6%,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는 1.7%, 말투가 달라서는 9.9%)이다.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국 국민들도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 배정 이후 담당형사의 역할에 대하여 과잉으로 친절한 사례가 지적되고.⁸⁶⁾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겪는 차별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⁸⁷⁾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고 부푼 꿈을 가지

82) 박순성, 고유환, 소라미, 이임하, 이희영, 전미영, 차문석, 홍민(2009). 앞의 논문.

83) 김재숙(2018). 북한이탈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H.Arendt 이론에 근거하여-.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4) 서보혁, 정상우, 김윤나(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화연구, 23(6), 49-71.

85) 통일연구원(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86) 박호성, 이규영, 김영수, 진희관, Manfred Wilke(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발간자료

87) 조영아(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여성연구, 89(2), 37-82.

고 하루하루를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모욕적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온 말은 ‘탈북자 주제에’였다.⁸⁸⁾ 실제로 90년대에는 먹고살기 위하여 탈북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은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지식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실제 남한사람들에 비하여 학력이 더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렵게 취업을 하지만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이직을 하고 직업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⁸⁹⁾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과 차별을 하는 일은 실제로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북한말투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며,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⁹⁰⁾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로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가난한 북한 출신이로서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등 북한출신이고, 여성이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⁹¹⁾ 또한 북한 말투나 사고방식의 순서가 지방특성의 하나로 남한과 서로 다른데, 일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나쁘고 잘못이라는 편견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⁹²⁾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하였다.⁹³⁾

선행연구의 인권침해 사례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취업이나 사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차별과

88) 김성남(2019). 앞의 논문.

89) 오은경(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 김이경(2019). 탈북여성의 가족해체 및 재구성 특성과 자녀양육 경험 -다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1) 이화진(2010). 북한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2) 김혜원(2019).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3) 윤병울(2017). ‘재중(在中)탈북자’ 국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은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한국에 왔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차별과 편견에 의한 상처로 또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탈남하고 있다. 김성남(2019)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남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 적응 못함,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에 대한 환멸, 아들이 고등학교 위원장 선거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추천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데에 대한 실망, 간첩 사건이 터지면 혹시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들어야 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치명적이며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은 '탈북자 주제에'라는 발언, 남한사회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도전으로 자신을 준비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음,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함,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편견 등이 다.⁹⁴⁾

4.1.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인권침해 보호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수준의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인권 침해 인줄 모르는 상황도 많으며 한국 대중 또한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인권 침해인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

94) 김성남(2019). 앞의 논문.

주민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즉, 북한 이탈주민은 감시와 억압 체제에서 살아 왔으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인권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참고 견디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발생하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가부장적 의식이 매우 강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죄책감 없이 하고, 교육기관에서 합숙하는 동안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침해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담 멘토가 필요하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적인 충격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면 사회정착은 좀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함과 동시에 전담 멘토를 지원한다. 멘토를 확보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교단체 및 사회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전담 멘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국내에 입국 한 탈북자 중에서 위장탈북 간첩, 일부의 범죄 통계가 밝혀지면 언론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해석하면서 경쟁적인 보도로, 다수의 선량한 북한이탈주민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의식을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통계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 극소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문제는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문제로 왜곡되어 이슈화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한 시민으로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이탈 문제도 다루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이자 남북한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선행자이므로 남북통합 과정에서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자라는 사

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 역군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담, 성공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한국 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먹고 살기 위해 입국한 ‘2등 국민’ 혹은 ‘변방인’이라는 냉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정착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가장 힘들어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체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데, 이는 사회정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전환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사회정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자각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일회성 지원,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자립여건을 마련해주고 함께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한국 조사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위장탈북 남파간첩 사건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들의 초기 한국 정착에 부정적 요인이 되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문은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사 중에 조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불필요

한 언행, 폭언, 막말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 신뢰감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여야 한다.

여섯째, 여성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사관을 확보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조사관이 직접 신문하거나 임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남성 조사관들에게 조사를 받는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조사관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을 희망한다. 따라서 여성 조사관 인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서 출생과 성장과정, 생활실태, 탈북동기, 가족력, 학력, 탈북경로, 국외 체류 행적에 대한 기초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이러한 자료를 유사 지역 출생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탈북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합동신문과정 중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조사 대기중에 외래어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의 사회정착교육을 병행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불만을 다소 해소하고 사회정착교육 기간 또한 단축하여 사회적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국가적 수준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국가적 수준의 인권침해에 알아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

원 제도를 알아보고 국내법적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제도 정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4.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자활 의지를 가지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 특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심리안정과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의 조속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자가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부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⁹⁵⁾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하나원의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 교육 * 연령대아 성별 7개 반을 운영(영어,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경로) * 정서 안정, 건강증진,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진로지도, 직업 탐색, 초기의 정착지원, 생애 대한 설계 프로그램 등의 5개 분야
	지역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 적응센터에서 8일동안 50시간 초기 집중교육과

95) 통일부(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교육 (지역적응 센터)	지역에 대한 적응지원 * 지역사회 이해와 진로,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 착금	기본금	• 1인 세대는 800만원, 2인 세대는 1,400만원, 3인 세대는 1900만원, 4인 세대는 2,400만원, 7인 세대 이상 3,9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에 2년동안 계속 거주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거주 지원금의 10%, 다른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지급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연령가산금(보고결정일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72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중증장애), 360만원(경중장애)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 등급 폐지(19.7.1.시행)로 장애 가산금 지원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중은 기존 4~6급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 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당 360만원 지급 • 제3국 출생 자녀의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지급
주거	주택알선	• 영구, 국민, 다세대, 임대주택을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 및 전세권·임차권은 변경 불가 함)
	주거지원금	• 1인 세대는 1,600만원, 2인~4인 세대는 2,000만원, 5인 이상은 2,3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에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기간 중에 훈련수당 지급 • 직업훈련 500시간 이상은 120만원, 620시간 이상은 140만원, 740시간 이상은 160만원 지급(국가 기관 전략산업과정 수료 시 200만원 추가 지급) • 자격취득 시 200만원 지급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은 폐지, 다만 2014. 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 된 자에게는 적용 함
	취업	•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장려금	
	고용지원금 (채용기업 주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 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 제도 (미래행복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함 - 지원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소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는 자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가능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의 특례입학 가능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시립대 50% 보조 가능
	상담	• 지역 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가능

출처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3. 8월, 2014. 1월, 2014. 5월)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기본

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제1차 기본계획(2015년 ~2017년), 2018년 2월에 제2차 기본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였으며, 매해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5월에 2021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2월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의 24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023년에는 신정부의 정책과제와 정착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정책과제와 정착지원제도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내용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내용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①남북통합문화센터의 활성화
	②일반국민과 탈북민 이해 교육
	③지역주민과 소통 및 교류 활성화
	④탈북민 단체를 지원
	⑤정착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대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①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강화
	②위기 탈북민 발굴 및 종합 지원
	③비대면 정착지원시스템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보호결정의 내실화 ⑤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 ⑥신변보호 개선 ⑦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강화 ⑧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
<p>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례관리 지원을 강화 ②의료지원의 확대 ③포털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 ④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의 확대 ⑤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적용 ⑥심리안정·정서지원의 체계화 ⑦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⑧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의 제공 ⑨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p>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 ②맞춤형 영농정착을 지원 ③탈북여의 취업지원 ④일자리 적응력을 제고 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확대 ⑥전문직 맞춤형육성의 강화 ⑦자산형성제도를 운영 ⑧채용유인제도의 개선
<p>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규학교 적응지원 협업체계의 구축 ②탈북학생 학교 적응력의 제고 ③맞춤형 멘토링을 지원 ④특성화학교에 대해 지원 ⑤잠재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 ⑥탈북대학생교육지원의 내실화 ⑦교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지원 ⑧대안교육시설 탈북청소년법의 교육 ⑨가족 단위 및 청소년 정착을 지원

	⑩아이돌봄을 지원 ⑪제3국 출생 자녀지원에 대한 강화 ⑫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및 치유 지원 ⑬무연고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강화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①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운영 ②하나원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③유관기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④하나원 직업교육관 기능의 확대 ⑤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체계 개편 ⑥전문상담 역량의 강화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시행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한 고립과 단절 및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2019년 8월 탈북 모자 사망, 2022년 10월 여성 백골시신 발견 등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탈북민의 정착지원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 업무 등을 정비하여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제고한다. 셋째,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상 정착한 탈북민에게 비중을 두기위해 지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현실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약 90%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상태이다.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두어⁹⁶⁾ 탈북자에 관한 각종 정부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한다(북한이탈주민법 제

96) 정부내 23개 부처·기관·지자체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

6조).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에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두어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동법 제15조의 2)를 관리한다. 또한 전국에 119개 탈북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거주지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내 민간단체, 지역거주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탈북자 특성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에서는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동법 제30조)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탈북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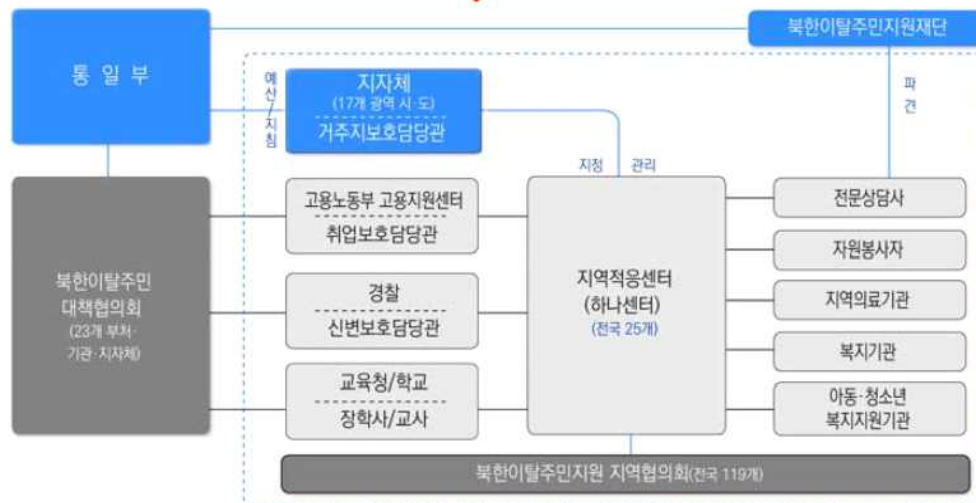


그림 2. 탈북자 지원 시스템⁹⁷⁾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해외체류 → 국내입국 → 거주지 전입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탈북자가 탈북 한 이후 해외체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호요청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북한이탈주민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97) 통일부(2020). 앞의 보고서.

하면(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1항), 해당하는 재외공관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에 상황을 보고하고 전파를 하며(동법 제7조 제2항), 해당 탈북자는 해외공관 및 주재국의 임시보호시설로 간다. 해외공관에서 해당 탈북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진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면 주재국과 입국교섭을 통하여 국내입국절차가 지원되며 탈북자는 국내로 입국한다.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결정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하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51)가 발행된다(동법 제7조 제3항). 조사결과는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되고(동법 제7조 제3항)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원이 확인된 자들은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간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기간(12주, 400시간) 동안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탈북자에 대한 법상의 보호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⁹⁸⁾ 줄 수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그 보호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한다(동법 제8조 제1항). 하나원에서 심리적 안정, 직업훈련 등의 사회적응교육(동법 제15조)을 끝마친 탈북자는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가족관계 창설(동법 제19조), 주거알선(동법 제20조), 정착금 지원(동법 제21조)등 초기정착지원을 받은 후에 거주지로 편입된다. 거주지에 전입하게 되면 5년간 거주지보호를 받는데 사회적안전

98)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거나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 그 밖에 북한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북한 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망 편입에 따라 의료(동법 제25조) 및 생계급여(동법 제26조)가 지급되며 취업 지원(동법 제17조), 교육지원(동법 제24조), 거주지 신변보호(동법 제22조의 2) 등이 이루어진다. 통일부장관은 탈북자의 사회 적응 및 생활안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동법 제30조)에 각종 사업을 위탁하며, 동 재단은 이러한 위탁에 따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탈북자 실태조사를 거쳐 탈북자를 위한 취업, 창업, 영농 정착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입북을 기도한 경우, 기타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다(법 제 27조). 다음 그림 3에서는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와 혼용하여 표기)의 남한 입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여성의 비중이 약 83.1%에 달한다. 과거에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인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가족단위로 입국하거나 청소년의 입국도 증가하였다. 또한 입국 현황상 청년층과 장년층의 입국비율이 높는데 그 이유는 탈북을 위해서 장시간 행군 등 육체적인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은 체력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수하므로 입국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탈북자 입국현황 특징은 재북 직업상 무직 및 노동자 등 사회 저변층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계획경제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북한 내의 일자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한편으로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지식

산업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적응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자활 의지를 가지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 하나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 특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심리안정과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의 조속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자가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부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는 실질적으로 연구되어 보고된 바가 없다.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⁹⁹⁾ 설문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 기술자격증의 취득, 의료지원 등의 욕구가 가장 높았다. 이에 노원구에서는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하는 등 취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는데, 직업훈련 비용과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신체적·정서적 어려움도 보살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재도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자립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데 일회성, 단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99) 국민일보(2021.01.04)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자립 돕기 본격 나섰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8106&code=61111311&cp=nv>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추진과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5)	1-1.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4) 1-2. 탈북민 취업역량 강화(3) 1-3. 탈북민 취업지원체계 재구축(1) 1-4. 자산형성제도 운영(1) 1-5. 탈북민 채용 유인제도 운영 및 확충(2)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4)	2-1. 정규학교 탈북청소년 적응력 강화(4) 2-2. 우수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 2-3. 대안교육시설 환경 개선(1) 2-4.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2)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3)	3-1.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절차 개선(2) 3-2. 정착금 지급 절차 개선(1) 3-3.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1)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2)	4-1. 지자체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1) 4-2. 민간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2)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2)	5-1. 하나센터 확충 및 운영기반 강화(2) 5-2. 하나센터 종사자 체우 개선 및 역량 강화(2)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4)	6-1. 생활보호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5) 6-2. 취약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5) 6-3. 신변보호 체계 재정비 및 강화(1) 6-4.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임시보호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2)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2)	7-1. 탈북민-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3) 7-2. 쌍방향 인식개선 교육 실시(2)

그림 3. 세부 추진계획¹⁰⁰⁾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 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및 2018-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참조

100) 통일부(2020). 앞의 보고서.

4.2.2 북한이탈주민 남한에서의 인권 침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행연구와 다수의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배경과 입국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사회 적응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청소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영역별 심층분석 면에서도 성장하는 추세이다.¹⁰¹⁾ 그러므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노동력 착취, 탈북여성 인신매매와 중국인과 강제 결혼,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다. 통일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 의사를 무시당하고 강제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의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국 측에 북한이탈주민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인권 침해는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인권침해인지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한 사회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또한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우리 국민은 말로만 한민족임을 강조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시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탈북자의 인권침해 및 사회 적응

101) 박정란, 강동완(2011).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5(2), 1-24.

과정의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영역별로도 구체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4.2.3 국내법적 보호 대응

4.2.3.1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국적 지위 부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을 자발적으로 이탈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¹⁰²⁾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은 ¹⁰³⁾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을 벗어나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공관에 보호 의사를 밝히면, 이들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 시키도록 규정하나, 「헌법」 영토조항의 해

102) 대법원은 1996년 11월에 선고한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11.12, 96누1221 판결.

103) 재외동포신문(2016.3.17),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http://www.nkrsuk.com/column_word/65642

석상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과 거주에 자유가 있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서도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⁰⁴⁾

국제인권법적 근거와 인권중심의 사고로 개인의 이주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실패나 안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실정법상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북한으로 재입국한 김련희씨 경우는 납치인지 여부의 논란이 있으며 입국사유는 불명확하지만¹⁰⁵⁾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입국이든 탈북이든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하겠다.

4.2.3.2 국민과 동등한 사법상의 권리

이산가족의 자손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도 상속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분단이 장기화되었으므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⁶⁾ 이 문제를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10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05) 한국일보(2017.8.19), 재입북한 임지현씨, 北 방송에 다시 등장, 압록강 헤엄쳐 건넜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9/2017081900841.html

두기 보다 입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공감), 아울러 제척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의 저해 등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 손해 보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¹⁰⁷⁾

이러한 판례는 한국법상 사법적인 권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관련한 사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4.2.3.3 무국적의 북한이탈주민과 아동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에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였으나 무국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중국 국적법 4조에서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많은데, 이런 경우 북한이탈주민 아동은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의 자녀로서의 출생 신고를 못해 무국적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2조는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 아동은 탈북자

106) 경향신문(2016.10.19).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92222015&code=940301

107) 북한주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 자료.

가 아니고, 제9조에 의하여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헌법」 제2조 제2항,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 간의 간격이 있다.

최근 사례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판정신청을 했으나 부모 없이 한국에온 무국적 탈북아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증명서 등 근거 자료가 없어서 한국국적 취득을 못하였지만, 외할머니의 유전자 검사로 이 아동이 외할머니 손주임을 증명하고, 「헌법」상 영토규정으로 북한국적자는 한국국적자이고, 「국적법」의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법무부는 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¹⁰⁸⁾

무국적 북한이탈주민은 적용되는 법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실속에서,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 및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정, 1951년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난민으로서의 지위인정과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부여, 기존의 UN인권조약을 적용함으로써 보완적 보호의 부여 등이 필요하다.¹⁰⁹⁾

또한 특히 무국적 북한이탈주민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의 적용에 따른 권리 부여 및 이를 이행하는 관련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2.3.4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실제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고 포용과

108) 연합뉴스(2015.5.1). 中 탈북자 2세는 사실상 무국적 신세…대책 절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30/0200000000AKR20150430204900371.HTM?input=1195m>

109) 장복희(2010).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홍익법학*, 11(1). p. 280.

화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단체는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이끄는 중요 행위자로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포용과 화합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¹⁰⁾

엔지오(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또는 엔피오(NPO, Non Profit Organization)라고 하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는 넓은 의미로 기업과 시민단체를 모두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정부기구,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든 기관들을 민간단체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민간단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¹¹¹⁾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단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을 돕고, 정부의 소극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표적으로 삼고 압력을 가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며, 사안에 따라서 연대를 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다른 시민운동 단체와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2003년 10월에는 U.N.을 방문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호소하고, 중국과 동남아에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110) 경기연구원(2016.6.24).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과 과제 https://blog.naver.com/gri_blog/220744918820

111) 지금까지 알려진 탈북자 관련 NGO는 ‘탈북자동지회’,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두리하나선교회’, ‘자유북한방송’,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한반도포럼’, ‘좋은벗들’, ‘피랍탈북인권연대’, ‘납북자가족협의회’, ‘피난처’, ‘Helping North Korea’, ‘북한인권정보센터’, ‘납북자가족모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탈북이주민연구소’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바른사회를 위한시민회의’ 등이 있으며 미국 서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젝트-엑스터스 21’이 있다. 또한 독일인 노베르트 폴러첸(Norbert Vollertsen)은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물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입국이 있는 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북한의 남북한 장관회의의 거부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탈북을 유도, 조장하는 이른바 '기획 탈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의 담보 상태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4.3 국제적 수준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만 또는 수십만인 북한이탈주민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도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도 강제혼인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혼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법적으로 신분이 모호하거나 중국에서 초등교육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취약계층 보호의 시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는 세계인권선언상의 보편적인 인권정신 실현과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보호의 범위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협약상 협약난민의 위치이고, 실상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기구(UHCR)가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받았거나 현지난민 상황에 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의 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인 보호와 북한으로 강제송환 금지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다.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보호 방안은, 개인으로서의 인권 보장, 대한민국 국민과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보호, 소수자 보호와 구제, 무국적탈북자, 탈북여성과 무국적탈북아동의 법적인 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실현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1 북한이탈주민 해외 인권 침해

「헌법」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또는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정하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¹¹²⁾ 상기 내용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문의 결정사항에서 보면 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12) 국가인권위원회(2019). 결정집례 11집,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면 불법으로 거주하는 신분이므로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어 지낸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국의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긴 채로 지낸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착취하고 북한이탈주민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현지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보호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여성은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1 강제송환

중국은 1960년에 북한과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 (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에 체결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여 검거하고 있다. 중국인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경관리방해죄'에 근거하여 처벌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중국 내의 체류 환경은 악화되었다. 중국 공안은 '국경관리방해죄'에 따라 국경지대의 20km 내의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잡아가거나 감시초소를 세워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¹¹³⁾ 강제송환의 규모는 중국 측의 단속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1998년의 경우 7월 이후 대대적인

113) 이수석, 유병선, 윤여상, 정주신, 김주삼, 윤미량, 오영달(2012).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프리마북스. p. 157.

북한이탈주민 단속활동으로 북한으로의 송환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7월 이전 매주 약 100여명에서 7월 이후에는 300~400명 선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¹¹⁴⁾ 송환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4-13세 정도의 어린이 들이 많다. 성인의 경우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도피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검거되는 경우가 적으나, 어린이의 경우 중국에 들어와서 조선족 가정에서 2-3일 정도 숙식을 제공 받고 나면 대다수 거리를 배회하다 공안에 검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북한 이탈이 용이하고 북으로 송환 후에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수가 북한 이탈을 시도하고 또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으로 송환 후 재 북한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최근 강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은 아동 혹은 식량 및 경제적 이유로 처음 탈북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 후 훈방조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강제 송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조사와 심문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루어지며 처벌 또한 엄격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먼저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 때 남한사람이나 기독교인과의 접촉, 남한으로 입국 시도, 인신매매 연루 여부를 조사하여 연관이 있으면 정치범으로 처벌한다. 반면에 단순 도망자는 도집경소로 이송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한 다음, 출신지역의 인민보안성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을 받고 출소한다.¹¹⁵⁾

러시아 내의 북한이탈주민은 러시아내의 벌목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탈출한 경우이고, 블라디보스톡과 중앙아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에서 전전하면서 의류 등의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노동자로 일을 한다. 현지 주민이나 한

114) 윤여상(2002). 강제송환 공포에 숨어사는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삶. 북한, p.187.

115) 우승지(2018). 남북관계의 이해.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p. 11.

국인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내의 북한이탈주민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을 통해 난민지위를 획득하거나 러시아와 우리 정부간에 외교적인 협상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권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안전원에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받으며, 체포가 되면 강제송환 당한다. 116)북한이탈주민은 러시아 경찰의 송환조치를 우려하여 작업장을 탈출하면 신분증이나 거주허가증을 폐기한다. 하지만 신분증이나 거주허가증을 미소지 한 경우 오히려 강제송환의 근거가 된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1993년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려던 북한이탈주민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다. 117)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러시아로 불법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여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넘나들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에 체포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체포되면 현지에 파견된 북한 안전원에게 인계되어 임의대로 서류를 작성한다. 서류 내용은 주로 대부분 한국으로 탈출기도, 한국방송 청취 등의 죄명이다. 서류에 강제로 날인을 시킨 후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송환에 반항하면 즉결 처형이 되기도 한다.118)러시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의 일부가 송환되지 않으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몰도바 소재 외국인 수용소에

116) 새로운 입업협정(1995년 2월 체결) 제 14조 5항에 의해 추적활동과 송환이 정당화 됨. 북한노동자의 모든 사역 또는 외화벌이 사업은 지방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함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받는다.

117) 1961년 5월 28일 `Amnesty 61` 활동으로 인권운동 시작하였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1961년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사형 폐지 및 난민의 수용과 처우 개선, 양심수 옹호, 국제 무기 거래의 저지 등을 통한 국제 사법정의 실현을 제창하는 인권 운동 단체이다. 로고인 철조망에 갇힌 촛불은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한다.

118) 통일연구원(2001) 북한인권백서. p. 141.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 당국의 송환자 처벌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일보(2023년 10월 12일)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감옥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백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생명을金正은 북한정권의 희생양으로 던져 버렸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단둥 및 훈춘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호송을 지휘하였다고 전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다수의 유아와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¹¹⁹⁾ 통일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의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4.3.1.2 노동력 착취

북한이탈주민은 신분상으로 불안하므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실정이다. 은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산간오지에서 양몰이를 하거나 벌목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현지인이 꺼리는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 체불을 요청하다 고용주로부터 오히려 불법 체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좋은 벗들의 발표에 의하면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69.1%가 결혼과 친인척에 의탁하지 않

119) 자유일보(2023.10.12).중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태영호 “강력 규탄”.<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1>

고 생활하고 있다.¹²⁰⁾ 일하면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40.9%는 숙식은 해결 받지만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임금착취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의심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탈출 후에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 자신의 신분과 직업과는 상관없이 각종 농촌, 공사장, 식당, 공장 등에서 단순노동직으로 일하며 임금은 중국 노동자의 1/2 수준으로 받기도 한다. 제 3국 내에서 먹고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벌지만 그나마도 이러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운이다. 따라서 일을 하다 구타와 폭언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밀린 월급을 못 받는 경우는 다반사이다.¹²¹⁾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중국의 사업주들은 중국동포로 신분을 가장해 일자리를 얻은 탈북자에게 거처와 식사만을 해결해주고, 월급을 후불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노동을 시킨 다음, 북한이탈주민이 밀린 월급을 요구하면 우연히 단속이 나온 것처럼 위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¹²²⁾

4.3.1.3 청소년 인권침해

남한과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

120) 김영수(2001).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정착의 과제와 전망. 좋은 벗들. p.14.

121) 통일연구원(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p. 13-20.

122) 박은주(2006). 최근 탈북자의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9.

한 협약'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²³⁾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노동능력과 은신처 확보 능력이 없으므로 자력에 의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체류지역에서는 단속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확률도 높다. 이들은 북한에서 부모가 아사(餓死)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해체가 되어 별다른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며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과 탈북하거나, 부모와 탈북하였지만 탈북 후에 부모가 병사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홀로 남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유랑걸식하며 구걸 및 절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중국에서 연명한다.¹²⁴⁾

이들은 교육도 못 받고 가정의 따뜻함도 체험하지 못하여 인성이 메마르고, 범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죄의식이 없고 일정한 거처 없이 빈집, 공사관, 역전 등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일정한 돈을 모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재탈북 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보면 북한에 거주 할 때, 중국에서 장기체류로 인해 학력 결손 비율이 학령기 청소년의 90% 수준으로 이들 대부분이 정규 학교과정에서 학습부적응 상태이다.¹²⁵⁾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은신처의 청소년 중에서 문자해독을 못하는 비율은 10~20%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는 인권침해는 생존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성폭력, 인신매매,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로 구분해 할 수 있다.¹²⁶⁾ 각 침해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3) 김태용(200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1.

124) 통일연구원(2000). 앞의 보고서.

125) 고경화(2006). 앞의 논문. p. 23

126) 김태용(2004). 앞의 논문. p. 27-29.

생존권은 음식과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보건의 권리를 말한다. 중국 현지조사 결과에서 중국으로 입국할 당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30%이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¹²⁷⁾ 결국 북한이탈 청소년의 70%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탈북을 결행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성장발육 이상으로 연령에 비해 다소 왜소한 체격과 각종 신체장애와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북한에서 식량 부족 사태와 중국에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양결핍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안전과 자율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공안의 구타와 체벌은 성인 탈북자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¹²⁸⁾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북한으로 송환된 후에 더욱 가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제 송환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강제송환된 청소년은 밤샘조사, 집단구타, 혹한에 옷을 벗겨 밤새 세워두기 등의 경험을 하였으며, 조사 중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었다는 증언도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은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착취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⁹⁾ 그러나 탈북 소녀들은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특히 단신으로 입국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국내 또는 국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면 인신매매 조직 또는 지역불량배의

127)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http://www.iloveminority.com>

128) 윤여상(2003).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2), 343-364.

12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4조, 35조.

표적이 된다. 청소년의 성적 착취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신체적 미성숙 상태에서 성 지식의 부족으로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고, 이에 따른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¹³⁰⁾

마지막으로 교육받을 권리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은 교육,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을 강조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교육체계의 붕괴, 중국에서 단속과 체류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4.3.2 국제법적 보호 대응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만 또는 수십만인 북한이탈주민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도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도 강제혼인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혼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법적으로 신분이 모호하거나 중국에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취약계층 보호의 시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는 세계인권선언상의 보편적인 인권정신 실현과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보호의 범위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협약상 협약난민의 위치이고, 실상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기구(UHCHR)가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받았거나 현지난민 상황에 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의 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인 보호와 북한으로 강제송환 금지의 대상이다.

130) 조선일보(2004.7.8). <http://blog.naver.com/orms?Redirect=Log&logNo=120016041343>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다.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내에서 보호 방안은, 개인으로서의 인권 보장, 대한민국 국민과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보호, 소수자 보호와 구제, 무국적탈북자, 탈북여성과 무국적 탈북아동의 법적인 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2.1 협약난민(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 제1조는, 1951년에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s)은 1951년 난민협약에 의하여 주권 정부가 비호신청인에게 법정 난민(*de jure* Refugee)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협약난민에 해당되는가 여부이다. 난민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조국과의 유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자국 정부가 있어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¹³¹⁾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 이주민으로,

131) 난민협약 제1조 참조.

북한에서 박해의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적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과 체결하고 있는 양자조약인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자발적인 북한이탈주민은 외관상으로는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총체적인 정치적인 불안정과 인권탄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탈북 유형이 변화되면서 자유를 원하고 북한체제에 불만이 큰 엘리트들의 탈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타국이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과 경제적 및 인권상황을 고려해 난민 혹은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03년 제54차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고려될 수 있다(North Korean de factos may well be considered refugees)고 인정하였다. 2013년에 UN 사무총장은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자격으로 한국에 왔을 때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였다.¹³²⁾

중국 내의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협약상 난민의 보편적 정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이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서 북한정권에 저항하여 중국으로 피신하였고, 경제적인 이주민이라면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밖에 있고 북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난민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1982년 9월 24일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접경지역에서 이들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는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하고 강제송환시키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1967년 난민의정서 제1조제1항)의 강제송환금

132) 조선일보(2016107), “물리학도 출신 ‘난민의 아버지’, 세계를 이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0288.html

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체포하여 송환시키는 중국과 북한 간의 밀입국자 송환협정은 난민협약,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UN 회원국이 가지는 UN헌장 제2조제2항(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이행), 제55조, 제56조와 제103조(1951년 난민협약 제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인 준수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된다.

국내법 차원에서, 중국은 2004년 헌법에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함을 공언한 바 있다. 중국헌법 제32조에서는¹³³⁾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외국인의 망명권 부여를 명문화 한다. 중국은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에 인접한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시점인 1992년 ~ 1993년 무렵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93년에는 러시아 난민법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¹³⁴⁾ 북한과 오랫동안 범죄인송환협정을 맺어오고 있다. 러시아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탈주민 211명이 당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2명만 망명허락받았고, 90명은 1년짜리 단기 망명 허가만 주었다.¹³⁵⁾ 러시아는 북한과 2016년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송환과 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탈북자송환협정)을 체결하여¹³⁶⁾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33) 중국헌법 제32조: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tect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within Chinese territory; foreigners on Chinese territory must abide by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grant asylum to foreigners who request it for political reasons.”

134) 오마이뉴스(2017416), “러 난민전문가 “트럼프, 망명 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9361

135) 연합뉴스(2016. 1. 29.), “30대 탈북자, 러시아 망명 거절당해 본국송환·처형 위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164800009.HT>
ML?input=1195m

136) 서울신문(2016. 3. 6.), “북,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05008>

최근 통계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을 떠나 세계 각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1천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에서는 세계난민의 날에 발표한 국제 동향 보고서 2015에서 '현재 난민 자격으로 사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1천 103명으로, 전년(1천 282명)보다 179명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지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합하면 1천 333명이라고 보고되고 있다.¹³⁷⁾

4.3.2.2 위임난민과 현지난민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에 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위임난민은 UN의 권한으로 보호받는 난민으로 볼 수 있다. 위임의 근거는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의 관련규정과 UN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의 여타 결의를 근거로 한다.

2003년 9월 29일,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려그룹으로 공식 발표하였고,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이후부터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는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떠한 지위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귀환되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송환시켜서는 안되는 우려대상자(Person of Concern)로 보고 있다.¹³⁸⁾

137) 연합뉴스(2016.6.21), "UNHCR '난민생활 탈북자 1천103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24400014.HTML>

138) In September 2004, the High Commissioner announced before EXCOM, UNHCR's Executive Committee, that North Koreans in China are "persons of concern." One reason why UNHCR

북한이탈주민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가 인정하는 위임난민'의 지위를 얻도록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 지위부여와 이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존중하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난민협약 제35조는 당사국이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의 임무수행에 협력할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임난민으로 인정고 강제송환을 막는 것은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도 될 수 있다.

북한처럼 억압통치를 하는 사회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난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북한의 정책, 1987년 북한 형법 제47조 및 제117조에 의해 중벌과 중형으로 처해지므로, 이들은 분명히 난민의 범주에 속하며 국제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에서는 박해로 인해 조국을 떠난 사람과 자국으로 되돌아갔을 때 부당한 형벌과 박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 역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s sur Place)로 규정하고 난민으로 생각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¹³⁹⁾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인정의 절차 없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이들이 귀환 시에 박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¹⁴⁰⁾

used this term was that it had no access to the North Koreans; another was that North Koreans could be said to be dual nationals who could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South Korea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persons who can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a country of which they are also nationals are to be excluded from refugee status).

Roberta Cohen(2010),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rookings Institution, 3면 참조.

<https://www.brookings.edu/opinions/legal-grounds-for-protection-of-north-korean-refugees>

139) UNHCR(1979),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eneva, para. 94.

140) Interview with UNHCR staff, 2010; and Statement to media by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tonio Guterres on conclusion of his miss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2006. 3. 23.); Roberta Cohen(2007), 3면에서 재인용.

4.3.2.3 고문방지협약

북한이탈주민 비호신청인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실상 난민지위(de Facto Refugee)와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대상자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박해를 받는 국가로는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조약 또한 관습에 근거한 규범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자 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인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모든 개인들에게 확대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에 고문 위험이 있거나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은 협약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관행상 이들을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게 하며 일시적으로 보호를 한다. 개인을 심각한 해악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면 안된다는 의무는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명시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협약상의 협약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UN인권조약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보호제도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지켜야 한다.

4.3.2.4 인도적 지위 부여 및 보완적 보호

북한이탈주민을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도,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사회권규약을 비준함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인도적 체류, 혹은 임시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이 서명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7조 21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실상 난민으로서의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북한난민의 새로운 형태의 난민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으며, 또한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보고서나 인권침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적인 수준, 국가적인 수준, 국제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응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여 인권침해도 증가하였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인신매매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 과거에 비해 여성 북한이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상황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는 주로 인신매매, 성매매 등과 같이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마음의 상처로 남고, 한국에 와서는 같은 언어를 쓰며 소통할 수 있지만 민족적 이념이 다르므로 인한 배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고 한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착비용을 많이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여 차별과 편견이 많아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적은 시골이나 또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가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피하고 숨어버리고 움츠러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려고 자신을 더욱 각성시키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며 한국 사회에 대하여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도 있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교육은 단지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¹⁴¹⁾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단위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현재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수준의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인권 침해 인줄 모르는 상황도 많으며 한국 대중 또한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인권 침해인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인적 보호 수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감시와 억압 체제에서 살다 왔으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인권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참고 견디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발생하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침해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성해야 한다.

141) 정상우, 강은영(2017). 앞의 논문.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담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를 확보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종교단체 및 사회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전담 멘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자제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통계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 극소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문제는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문제로 왜곡되어 이슈화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국민이자 남북한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선행자이므로 남북통합 과정에서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담, 성공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정착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가장 힘들어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체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데, 이는 사회정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일회성 지원,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자립여건을 마련해주고 함께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한국 조사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조사관은 조사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사 중에 조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언행, 폭언, 막말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 신뢰감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여야 한다.

여섯째, 여성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사관을 확보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조사관이 직접 신문하거나 입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남성 조사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을 희망한다. 따라서 여성 조사

관 인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서 출생과 성장과정, 생활실태, 탈북동기, 가족력, 학력, 탈북경로, 국외 체류 행적에 대한 기초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자료를 유사 지역 출생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탈북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국내법 보호 수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만민평등에 초점을 맞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인도(Humanity)라는 목적으로 인권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의 범위안에서 자유권의 규약과 사회권의 규약상 권리가 국내법상에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한 개인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¹⁴²⁾

둘째, 「헌법」과 국내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자이지만 정책결정권한에서 소수자 보호와 구제정책(Affirmative Action)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평생교육과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이 우선시 되어야만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보호 및 소수자의 보호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셋째, 통일문제와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생각해보면 해당

142) 장복희(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이화젠더법학, 9(2), 125-158.

정책 결정에는 관련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및 정책에 북한이탈주민을 참여시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4. 국제법상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인 지위는 난민협약에 따라서 협약난민 지위와 보호를 하는 국가도 있고, 위임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에서는 현지난민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은 난민협약이 아니고 국제인권규약, 자유권 규약, 고문방지협약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지위에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상 다양한 보호형태의 인도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관행상 복송을 금지시키는 노력을 한다. 인권문제가 정치성을 띠는 경우 왜곡되기 쉬우므로, 현실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결국 법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협약난민, 또는 난민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막고,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끊임없이 정치적 노력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법 보호 수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협약난민의 지위에 있다. 사실상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가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하거나 현지난민 위치에 있고,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인 보호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일시적인 보호를 통해 인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유출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는 동안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도는 북한이탈주민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못지않게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방 및 보호, 해결의 전략을 강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유출을 예방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사례와 같은 실태 등을 기록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들은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된다.¹⁴³⁾ 그러므로 인권정보와 통계가 축적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자료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기록 조사가 확대되어 정보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함을 피력하는 바이다.

넷째,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긴급한 필수요건을 해결하도록 중국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¹⁴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다.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므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우리정부에서는 촉구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리더국이다. 그러므로 리더국의 위상을 생각하여 국제법 준수를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지금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북한의 인권문제

143) 연합뉴스(2017.4.19).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대상 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9/0200000000AKR20170419089100014.HT ML?input=1195m>

144) 임현진, 정영철(2006). The Political and Human Rights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87-116.

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남한이나, 북한 및 주변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¹⁴⁵⁾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동아시아 지역 내의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아시아지역 내의 특수한 인권상황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조약체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는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의 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의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여전히 다양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상호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고,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에 관한 교육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145) 박중문(200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재외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7(3), 151-174.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고경화(2006). 국내외 북한이 탈주민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 국가인권위원회(2020. 07. 20). 법률 제17126호_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2019). 결정집례 11집,
- 김도균(2006). 인권의 개념과 원리. 임재홍 외, 인권법. 서울: 아카넷.
- 김미주, 김석향(2020). 중국 내 탈북여성· 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젠더와 문화, 13(2), 191-221.
- 김비환(2010).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 김성남(2019). 탈북민의 영국 이주 생활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경(2019). 탈북여성의 가족해체 및 재구성 특성과 자녀양육 경험 - 다자녀를 둔 여성 한 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2, 1780.
- 김영수(2001).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정착의 과제와 전망. 좋은 벗들.
- 김영자(2000).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북한인권시민연합. 47-50.
- 김윤나(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1-21.
- 김재숙(2018). 북한이탈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 H.Arendt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용(2004). 북한이탈주민의 범적 지위와 지원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
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2014). 클릭! 교육목회 자료: 문화 엿보기; 따뜻한 밥상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가족, 사랑. 교육교회, 438,
- 김혜원(2019).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성, 고유환, 소라미, 이임하, 이영희, 전미영, 차문석(2009). 탈북여성의 탈
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
센터.
- 박은주(2006). 최근 탈북자의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란, 강동완(2011).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경
제·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62.
- 박정란, 강동완(2011).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5(2),
1-24.
- 박종문(200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재외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7(3), 151-174.
- 박찬운(2011). 인권법. 파주 : 한울.
- 박호성(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NHRC] 국가인권위
원회 발간자료.
- 박호성(2004, November).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현황과 개선 방
안. I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188-207.
- 박호성, 이규영, 김영수, 진희관, Manfred Wilke(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
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발간자료
- 배성희(202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통일연구원(2001) 북한인권백서.
- 서보혁, 정상우, 김윤나(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
화연구, 23(6), 49-71.

- 신미녀(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1), 110.
- 오병선 박종보 김비환 홍성필 박경서(2011). 인권의 해설.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오은경(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경, 류진아(2021).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분석: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여성연구.
- 우승지(2018). 남북관계의 이해.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 윤여상(2002). 강제송환 공포에 숨어사는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삶. 북한.
- 윤여상(2003).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2), 343-364.
- 양민숙, 이동훈. (2017).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137.
- 이금순(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상훈(2012)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이원웅, 이해우, 전진용, 노진원, 한우리(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64-01.
- 이수석, 유병선, 윤여상, 정주신, 김주삼, 윤미량, 오영달(2012).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프리마북스. p. 157.
- 이우영(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p. 18.
- 이진혁, 최정민(2020).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3), 73-91.
- 이화진(2010). 북한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현진, 정영철(2006). The Political and Human Rights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87-116.
- 장복희(2010).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홍익법학, 11(1). 280.
- 장복희(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이화젠더법학, 9(2), 125-158.
- 정상우, 강은영(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175-208.
- 정상우, 서보혁, 김윤나, 최정호(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1-1620000-0006260
-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 정영철, 손호철(2014).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현대정치연구, 7(1), 259-283.
- 조소연(2015). 국제인권법을 통해 본 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윤리연구, 1(105), 243.
- 조영아(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여성연구, 89(2), 37-82.
- 조태훈(2011). 논단 : 인권의 개념. 민족연구, 0(45), 156-178.
-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서울 : 후마니타스.
- 주인석(202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문제-국제사회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통일전략, 22(1), 135.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연구원(2001)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외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 통일연구원(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Donnelly. J.(1998),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 오름.
- Freeman. M.(2002), 김철효 역(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 아르케.

2. 국외 문헌

Campbell, Tom(2006). Rights :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Interview with UNHCR staff, 2010; and Statement to media by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tonio Guterres on conclusion of his miss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2006. 3. 23.); Roberta Cohen(2007),
각주 98 논문(주 1), 3면에서 재인용.

R. Alexy,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S. Gosepath/G. Lohmann(편),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제2판, Frankfurt/M, 1999, p. 246.

UNHCR(1979),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eneva, para. 94.

3. 인터넷 자료

경기연구원(2016.6.24).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과 과제https://blog.naver.com/gri_blog/220744918820

경향신문(2016.10.19).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92222015&code=940301

국가인권위원회(2023.03.01).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92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국민일보(2021.01.04).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자립 돕기 본격 나섰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8106&code=6111113>

11&cp=nv

관계부처 합동(2023).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뉴스핌(2020.1.17)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00117000252>

연합뉴스(2015.5.1). 中 탈북자 2세는 사실상 무국적 신세...대책 절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30/0200000000AKR20150430204900371.HTML?input=1195m>

서울신문(2016.3.6). 북, 러시아 이어 라오스에도 ‘탈북자 송환’ 협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05008>

아시아경제(2018.6.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1412034419935>

아시아타임즈(2018.09.26). 인권위,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해야.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180925278261>

오마이뉴스(2017.4.16.), “러 난민전문가 “트럼프, 망명 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9361

연합뉴스(2018.9.30). 김정은 체제 이후 한국입국 탈북 감소..통제강화 원인.
<https://www.yna.co.kr/view/AKR20180930028200001?input=1195m>

연합뉴스(2004.3.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cid=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03046>

연합뉴스(2016.1.29.), “30대 탈북자, 러시아 망명 거절당해 본국송환·처형 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164800009.HTML?input=1195m>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http://www.iloveminority.com>

연합뉴스(2016.6.21). UNHCR ‘난민생활 탈북자 1천103명, <https://www.brookings.edu/opinions/legal-grounds-for-protection-of-north-korean-refugees>

- 연합뉴스(2017.4.19.).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대상 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9/0200000000AKR20170419089100014.HT ML?input=1195m>
- 자유일보(2023.10.12.). 중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태영호 “강력 규탄”.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1>
- 조선일보 (2004.7.8.). [http : //blog.naver.com/orms?Redirect=Log&logNo=120016041343](http://blog.naver.com/orms?Redirect=Log&logNo=120016041343)
- 조선일보(2016.10.7.). 물리학도 출신 ‘난민의 아버지’, 세계를 이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0288.html
- 재외동포신문(2016.3.17.).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http://www.nkrsuk.com/column_word/65642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3년%2011월%2015일%20검색))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2011월%2015일%20검색))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2011월%2015일%20검색))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archive/tus\(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archive/tus(2023년%2011월%2015일%20검색))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 11월 15일 검색\)](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tus(2023년%2011월%2015일%20검색))
- 한국일보(2017.8.19). 재입북한 임지현씨, 北 방송에 다시 등장, 압록강 헤엄쳐 건넜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9/2017081900841.html

4. 법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4조, 35조.

난민협약 제1조 참조.

중국헌법 제32조: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tect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within Chinese territory; foreigners on Chinese territory must abide by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grant asylum to foreigners who request it for political reasons.”

대법원은 1996년 11월에 선고한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11.12, 96누1221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BSTRAC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k Gwi Young

Dep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suggest responses. The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proportion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has also increased. Women are relatively sexually vulnerable compared to men, and this has led to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se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1. The number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s current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xperienced in China are mainly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Diplomatic efforts with China are needed to address this issue.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experienced b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Korean public leaves a deep scar on their hear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ontinuous human rights education be provided to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way to quickly integrate them into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resettlement stage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pand and strengthen ongoing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and institutionalize it.

2.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occur at the individual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many cases, North Korean defectors themselves are unaware that they are violating human rights, and the South Korean public is often unaware that their actions and words are violating human rights.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for personal protection.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 dedicated mentors who can help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an end to sensationalized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 investigators also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 dedicated investigator for women North Kore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women North Koreans should be interviewed by female investigator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analyzed and managed.

3. Ensure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individuals as a countermeasure to domestic legal protect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ensur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he same status and rights as South Korean citizens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It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involv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formulation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reunification issu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4.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rd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law varies, with some countries granting them Convention refugee status and protection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while others recognize them as delegated refugees. We must continue to make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to grant North Korean defectors Convention refugee or refugee-like status to prevent their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to grant them universal human rights status in the countries where they reside. Multilateral efforts should be made to stem the outflow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trategy of prevention, protection and resolution to prevent the out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pand the investigation of the human rights record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establish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engage in active diplomatic efforts to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address the urgent ne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 to engage in international public debate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o weake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ystem and demoralize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o encourage North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related norms; and allo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operate freel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ction measures